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 30 대 제 1 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4 년 1 월 11 일 오후 11 시 20 분

장소: Fairfax Marriott at Fair Oaks, 11787 US-50, Fairfax, VA 22033

참석상임이사 43 명

사회 차석부이사장 강석효

- 성원보고:
  - 수석부이사장 이경로 – 재적상임이사 43 명, 참석 43 명 전원참석으로 성원이 만족되었음을 보고
- 개회선언
  - 이사장 김일진
- 총회장 및 이사장 인사
  - 일반이사회에 이어 개회 됨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
- 전 회의록 낭독
  - 수석부이사장 이경로
- 전 회의록 통과
  - 김일진 이사장이 회의진행을 이경로 수석부이사장에게 인계
  - 제 1 원안 공탁금 부정관리 보고의 건 통과
  - 제 2 원안 상설기관 증설 및 상설위원장 인준의 건
  - 정책개발위원장 장익균 인준 건 – 원안대로 통과
  - 회칙위원장 신필영 인준 건
    - 의장대행 이경로 – 상설위원장 임기에 대한 오판이 있었으므로 상설위원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통상 제 기구의 임원의 임기의 시작과 끝이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하게 되며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연속성을 위해서 2 대의 총회장 임기와 함께 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29 대 마지막 시카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인준된 날로부터 4 년이라는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고 통과되었으므로 이는 회칙에서 정한 취지와 통상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따르게 된다면 향후 미주총연 상설위원장의 임기가 제각각 다르게 되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설위원장의 임기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 1. 모든 임원의 임기가 회장의 임기와 함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하며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2 대의 회장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
- 2.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4 년으로 하는 게 맞다
-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1 안이 통과 됨
- 그러므로 신필영의 임기는 28 대와 29 대에 걸쳐서 회칙위원장의 임기를 맡았던 이경로 전 회칙위원장의 잔여 임기에 해당되므로 2023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되었음을 확인 함.

○ 윤리위원장 김격 인준 건

- 의장대행 이경로 – 회칙에 의하면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석자가 39 명이었던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20 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 그러므로 김격 윤리위원장 인준의 건은 20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6 명이 찬성했으므로 부결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찬성 16 명, 반대 9 명의 결과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므로 통과됐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명백하게 회칙을 위반한 결정이므로 김격에 대한 윤리위원장 인준은 잘못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상임이사회에서의 의결을 묵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다.
- 1. 잘못 되었지만 지난 상임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고 인준이 된 것으로 하자
- 2.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므로 지난 상임이사회에서의 인준은 무효화해야 된다

이상 2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였으나 2 안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였으므로 29 대 시카고 상임이사회에서 김격에 대한 윤리위원장 인준 건은 무효화 됨

○ 고문단위원회 신설 및 위원장 인준의 건

- 지난 29 대 시카고 상임이사회에서 고문단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증설되었다고 하는데 상설기구는 회칙에 명시된 기구로써 회칙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회장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과 상설위원회를 신설하는건 전혀 다르다. 상설위원회는 회칙에 명시된 것만 상설위원회의 자격을 얻을수 있다. 회칙을 먼저 개정해야되는 사항이라 원안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 시킬수 없다. 30 대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야될 사항이다.
- 고문단위원회 신설 및 위원장 인준의 건은 무효화 됨

○ 제 3 원안 30 대 총회장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선거가 이미 끝났으므로 원안대로 통과

○ 기타 안건

- 원안이 아닌 이경로 회장과 김 격 회장의 화해의 내용임
- 김격 - 시카고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원안이 회칙에 위배된다 하여 통과시키지 않는다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격 윤리위원장 대행 통과된 안건이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통과 되자 않았다는 이경로 수석부이사장의 설명에 반박.
- 이경로 수석부이사장의 부연설명 - 회칙 제 24 조 정족수 설명  
회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칙에 어긋나게 원안을 통과시킨 내용은 수정되어야한다. 전회의록 낭독의 목적이 회의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 했던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재삼 판단을 함으로써 바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전 회의록 낭독과 통과가 있는 것이다.
-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공석 중인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준을 해야하나 서정일 총회장께서 아직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상설위원장 인준이 없다.

- 전회의록 낭독에대한 통과
  - 헬렌장 – 원안에 동의
  - 조경구 – 재청
  - 개의 – 회칙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하기로 재의
  - 전회의록 낭독과 통과는 회의록이 회의 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를 통과하는것이므로 개의는 합당치 않다
  - 김일진 이사장 – 전 회의록 통과 선포

[참고사항]

- 제 1 의안 – 전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김격 윤리위원장 대행 원안이 의결 정족수 20 명이상 찬성 미달로 회칙에 위배됐음에도 통과를 수용할것인지, 통과된 원안을 무효로 할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 상임이사만 발언권이 있다.
  - 박경덕 – 회칙을 인지하지 못한것 같다. 그당시 의도는 김격 회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인준한 것으로 통과시킨것이다. 인준된 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 오마리 – 재청
  - 최광희 – 과정이 잘못됐으니 30 대에서 수정하고 넘어가야한다. 29 대 상임이사 정족수부터 문제가 있었다. 회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회칙에 어긋난 원안 통과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개 – 재청
  - 표결 개의안 27 명 찬성, 동의안 찬성 없음
  - 개의안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제 29 대 상임이사에서 회칙을 위반하고 통과된 김격 윤리위원장 인준은 없는걸로 하고 삭제함 통과를 선포.
- 제 2 의안 ( 상설위원장 임기가 위촉/인준 된 날로 부터 4 년 인지 임명한 회장으로 부터 다음 회장까지 4 년인지)
  - 회칙 3 장: 조직 및 기구, 10 조 기구, 9 항 상설, 특별위원회 에 의하면 총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로 되어있다.
  - 헬렌장 – 날짜에서 날짜가 아니고 두 총회장 임기와 동일하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한다.

- 이정우 – 재청
  - 장대현 이의제기 – 동의를 얻고 재청을 해서 투표를 한다는것은 회칙에 따라서가 아니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임기를 정할 안이므로 이경로, 신필영 두 분 회칙위원장의 유권해석을 듣도록 하면 좋겠다.
  - 이경로 의장 대행 – 현재 회칙위원장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은 불가능하다.
  - 의사 진행 발언 – 모든 임원과 기관과 직분의 대한 것은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로 되어있다. 회칙대로 하자.
  - 이의 없음.
  - 회칙에 기록된 상설위원장 4년 임기는 회장 two term 으로 판단한다.
  - 반대 없음
  - 만장일치로 통과
  - 지난 29 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신필영 회칙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끝난 것으로 결정하고 김일진 이사장이 공포함.
- 제 3 의안 – 감사 선출
    - 서정일 총회장 – 행정감사 주용, 재정감사 김영일 추천.
    - 반대 없음
    - 만장일치로 선출됨.
- 광고 – 최광희
    - 나가시면서 준비된 도시락을 챙겨 가실것.
    - 점심식사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오후 1:30 분에 모일것.
- 폐회선언 – 김일진 이사장 (12: 40pm)
  - 회의록 작성 – 박윤주